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: 2022. 9. 22.

발 의 자 : 신원식 · 윤두현 · 이인선

최승재 • 안병길 • 강대식

하영제 • 백종헌 • 조해진

이태규 · 김상훈 · 이채익

정찬민・성일종・金炳旭

임병헌 · 안철수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연구개발의 가능성과 기술적 ·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전시·사변·해외파병 등 긴급한무기체계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.

이에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,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 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,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 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단서 등).

법률 제 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단서 중 "소요가 있는 경우에는"을 "소요가 있거나 각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방부장관이 선정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단기간 내 중대한 성능개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한다.

제46조제1항 전단 중 "수리부속품"을 "수리부속품,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법 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 법 등) ① -----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 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 발의 가능성·소요시기 및 소요 량, 국방과학기술수준, 방위산 업육성효과, 기술적·경제적 타 당성,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한 선행연구(先行 硏究)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 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시·사변·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 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 -----소요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있거나 각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다. 후 단기간에 전력화 추진이 가 능한 경우에는----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22조(성능개량) ① (생 략) 제22조(성능개량) ① (현행과 같 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 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. <u><단</u> 서 신설>

③ (생략)

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 ① 정부 기 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·장기계약·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급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②
<u>다</u>
만, 국방부장관이 선정하는 첨
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
단기간 내 중대한 성능개량이
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
성능개량을 추진한다.
 ③ (현행과 같음)
제46조(계약의 특례 등) ①
수리부속품, 정비
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
•